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909

발의연월일: 2020. 11. 30.

발 의 자:권인숙·김홍걸・남인순

신동근・유정주・윤미향

윤후덕 • 이수진(비) • 이은주

이탄희 · 장혜영 · 정춘숙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 제16조는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에 제대로 반영·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별영향평가법」상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성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여 성별 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호).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정부는"을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	제16조(예산의 원칙)
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정부는</u> 예산이 여성과 남성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
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